

춘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507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77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5076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소44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누나로, 2011. 11. 20.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C 및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총 11,84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인출 또는 이체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시	금액(원)	비고
2011. 12. 15.	120,000	E에게 이체
2011. 12. 15.	300,000	현금 인출
2011. 12. 26.	500,000	현금 인출
2012. 6. 15.	500,000	현금 인출
2012. 6. 20.	1,000,000	현금 인출(출금수수료 400원 제외)
2012. 9. 19.	500,000	현금 인출
2012. 11. 6.	200,000	현금 인출
2012. 11. 29.	100,000	현금 인출
2012. 12. 21.	100,000	현금 인출
2012. 12. 21.	325,000	C에게 이체
2013. 2. 13.	500,000	현금 인출
2013. 4. 13.	500,000	현금 인출
2013. 6. 20.	1,500,000	현금 인출
2013. 9. 11.	1,000,000	현금 인출
2013. 9. 12.	1,000,000	현금 인출
2013. 11. 18.	500,000	현금 인출
2013. 12. 16.	1,000,000	현금 인출
2014. 1. 22.	500,000	현금 인출
2014. 2. 3.	200,000	현금 인출
2014. 2. 11.	500,000	C에게 이체
2014. 5. 10.	1,000,000	현금 인출
합계	11,84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 몰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1년생의 고령으로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12. 29. F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및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억력 부전’을, 2017. 12. 11. G병원에서 ‘뇌간의 양성 신생물’의 발생 및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을 각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시기는 이러한 진단을 받기 적어도 5년 내지 2년 7개월 전으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리분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으로, 장기요양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¹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장기요양등급 및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될 무렵에는 원고가 충분히 의사능력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원고와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 원고는 2011. 11. 20.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합계 3,645,000원으로, 원고가 약 1년 간 피고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평균 인출 금액은 약 3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나 인출금액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인출된 금원은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④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증감변동은 있었으나 꾸준히 늘어났고, 원고가 마지막 인출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5. 10. 당시의 잔고는 26,846,128원이다(갑 제1호증). 이러한 이 사건 계좌의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H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8. 21.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는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11,845,4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준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H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를 대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9. 12. 18. 제1심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H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언동과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아 이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인 원고의

소송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있음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과연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인지 의문은 있으나,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에는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함은 물론, ‘받을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요’라고 진술한 점,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도 2019. 11. 28.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점 및 위 ①, ②항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은상, 판사 송종선